

『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·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제한  
조례안』에 대한

##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·출연기관 퇴직자 취업  
제한 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퇴직공무원 및 출자·출연기관  
퇴직자 취업 제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 
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중앙정부에서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  
제한)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 
현재 서울시의 일부 출자·출연기관의 경우 관련 직무

종사 공직자가 퇴직 후 산하기관 관리자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 차원의 엄격한 관리·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며,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- 공공기관 퇴직자의 하위 기관으로의 이직은 상위기관의 엄격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.
  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취업제한 및 출자·출연 기관 임직원의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. 또한 이를 위반한 취업자의 해임 요구와 관련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,  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